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3호 2024. 1. 19.(금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4-9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4-11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4
- 하동군 고시 제2024-1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5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62호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7
- 하동군 공고 제2024-98호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8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4-27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공표 45
- 하동군 공고 제2024-82호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고 49
- 하동군 공고 제2024-91호 자동차 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3년 12월) 51
- 하동군 공고 제2024-95호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55
- 하동군 공고 제2024-110호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공고 . 62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24 - 9호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1. 10.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4-00001
2. 허가연월일 : 2024. 1. 10.
3. 점·사용의 목적 : 토사 야적장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775-1, 522㎡
5. 점·사용의 기간 : 2024. 1. 10. ~ 2029. 1. 09.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대흥산업개발(주)

하동군 고시 제2024-1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01. 16.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4-00002
2. 허가연월일 : 2024. 01. 16.
3. 점·사용의 목적 : 농사 및 농기계 적재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1310, 2,970㎡
경남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1310
경남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1310
5. 점·사용의 기간 : 2024. 01. 16. ~ 2029. 01. 15.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최**

하동군 고시 제2024-1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6.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해안길 242-1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1.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28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해안길 242-1	20240116	해변을 끼고있는 마을의 의미를 유지코자 중평해안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47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59	20240116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303-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중대2길 63-19	20240116	중대리 윗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09-19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신기궁항길 293	20240116	신기마을과 궁항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47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뒷뜰길 103	20240116	정수와 접한 마을인데 의양의 뒷뜰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해안길 288	20240116	해변을 끼고있는 마을의 의미를 유지코자 중평해안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52-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213-1	20240116	수로왕이 칠왕자를 만나려고 왔다가 머문곳으로 범왕시를 창건하였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318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단천길 162	20240116	박달나무가 많은 시냇가 마을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공고 제2024-62호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차별화된 장르와 특색있는 문화공연 향유로 군민의 문화 예술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하동군립예술단을 창단하여 이에 대한 운영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 내용 : 하동예술단 구성 근거 마련, 예술단원의 위·해촉, 복무 및 정기평정, 급여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과, 055-880-2364, FAX 055-880-2369, h9901071@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하동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운영자”란 하동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군수의 지휘를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및 정기·수시공연을 연구·기획·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원”이란 예술단의 일원으로서 공연연습 참가 및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객원”이란 예술단의 일원이 아닌 자로서 예술단 공연에 협연을 위하여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개전형”이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서류 및 면접으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시 실기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특별전형”이란 서류심사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와 면접을 병행할 수 있다.
6. “정기공연”이란 군민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7. “수시공연”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 문화·기념행사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하여

시행하는 정기공연 외의 모든 공연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은 총괄운영자 1명, 단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총괄운영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은 공개모집한다.

제4조(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민을 위한 정기·수시공연

2. 그 밖에 군수가 예술단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제5조(단원 등의 위촉) ① 단원 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단,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②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5호의 특별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단원 등의 연령) ①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② 총괄운영자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의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촉기간) ①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총괄운영자의 보궐임기는 전임 총괄운영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된 총괄운영자가 해임 및 사직하는 경우 총괄운영자가 위촉되기 전까

지 단원 중 한 명이 전체 단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재위촉) ① 총괄운영자의 재위촉은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 등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10조(단원 등 해촉) 군수는 위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원 등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사람
2. 예술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출연 또는 주어진 임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5. 정기평정 결과 80점 미만인 사람
6.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근무방법) ① 총괄운영자는 주 3일, 월 12일 이상 출근하여 매회 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주 2일, 월 8일 이상 출근하여 매회 3시간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일 등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단원 등의 복무) ① 단원 등은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복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정기평정 및 채점) ① 군수는 단원의 자질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근무평정은 연 1회 실시하며, 근무평정은 매 1년에 50퍼센트를 적용하고 2년을 균등 합산하여 정기평정에 적용한다.

③ 실기평정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④ 근무평정은 별지 서식의 평정표를 작성하고, 평점배점 및 가·감점 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14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및 정기평정 등을 위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당연직 위원에 총괄운영자를 포함한다.

제15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실기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방법,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급여) 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기본급, 공연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17조(공연료) ① 다른 기관·단체에서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려면 별표 3에 따른 초청공연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연료는 하동군 수입으로 한다.

② 군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공연을 할 수 있다.

제18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제19조(실비보상)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및 공연에 출연하는 객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공연료)제1항의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그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다.

[별표 1]

근무평정 배점표(제13조제4항 관련)

평정구분	평 정 항 목		배점	평 정 방 법	비고	
근무평정	직무수행태도	근태관리	10점	20점	출 · 퇴근	
		책 임 성	5점		준비성, 완결성	
		협 조 성	5점		동료애, 인간관계	
	예술단 기여도		20점	20점	공연출연횟수,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기 타	가·감점	가 점	5점			
		감 점	5점			

근무평정 가·감점 기준

가점항목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광역단체장상	시장·군수상
	5점	4점	3점	2점	1점
감점항목	출연거부	무단결근	무단조퇴·외출	지각	경고 및 주의
	5점	3점	2점	1점	1점

[별표 2]

기본급 및 제수당 지급표(제16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본급	공연수당	비 고
총괄운영자	5급 본봉상당	○근무일 공연 - 150,000 ○비근무일 공연 - 300,000	
단원	9급 본봉상당	○근무일 공연 - 100,000 ○비근무일 공연 - 200,000	

※ 30분 이상 공연 시 공연수당 지급 및 관용차량(관외공연) 지원이 불가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6급 이하)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 지급

[별표 3]

공연료 납부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공 연 료	비 고
관 내	300,000~3,000,000	
관 외	1,000,000~5,000,0000	

하동군 공고 제2024- 98호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개정 및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지원 시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조례
-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 1. 1.)에 따라 제정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통.폐합을 통해 인구감소대응 정책 수립등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함
- 인구감소대응 및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제정

3. 주요 내용

- 조례 제명 개정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조례
-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인구감소지역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인구감소대응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하동군(참조 : 미래전략담당관, 055-880-2842, FAX 055-880-7159, un3789@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조례(안) 1부
2.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로 한다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하동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

제4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하동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지역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은 부군수, 미래전략담당관, 가족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전교통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탈퇴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

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하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4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제15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입장려지원
2.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3.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
4. 일자리, 주택, 복지, 문화, 교통, 관광 등 지역활성화 및 정주여건개선
5.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등 범죄 예방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 관광, 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8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인구교육 · 홍보) ① 군수는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 ·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사업의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포상) 군수는 군의 인구감소대응 정책 마련과 추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하동군 인구 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제16조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하동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① 「하동군 인구감소대응조례」에 따라 구성된 하동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하동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 전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하동군 시행규칙 제 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구증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별 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인구증대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내용과 지원기준이 맞는지 확인 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5일까지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읍·면장은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증대시책 지원 세부사업 및 지원기준(제2조 관련)

분야	세부 사업명 (소관부서)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지원	임산부철분제 (건강증진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최대 6개월분) 지급														
	태아염색체검사비 (건강증진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 질환, 태아의 염색체 이상 등으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검사를 실시한 임산부	최대 60만원 이내														
	임신부가사돌봄서비스지원사업 (미래전략담당관)	신청일 기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전까지 최대 567천원 지원														
	산후조리비 (건강증진과)	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모 모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 산후조리원 이용시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원 미이용시 최대 50만원 ※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인 초과 인원에 대하여 50% 가산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건강증진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유형 '표준' 신청 시 '본인부담금' 전액 - 서비스 유형 '단축' 신청 시 '단축' 금액 - 서비스 유형 '연장' 신청 시 '표준' 금액														
	출산장려금 (미래전략담당관)	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진출이력이 없어야 한다	· 출생아 모두 출산축하금(신청다음달), 돌축하금(12회차) 지급 - 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 각 150만원 · 분할지급 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자녀수</th> <th>지급액</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첫째아</td> <td>440만원</td> <td>월1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24개월</td> </tr> <tr> <td>둘째아</td> <td>1,100만원</td> <td>월15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60개월</td> </tr> <tr> <td>셋째아</td> <td>1,700만원</td> <td>월25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60개월</td> </tr> <tr> <td>넷째아이상</td> <td>3,000만원</td> <td>월45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60개월</td> </tr> </tbody> </table>	자녀수	지급액	지원내용	첫째아	440만원	월1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24개월	둘째아	1,100만원	월15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60개월	셋째아	1,700만원	월25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60개월	넷째아이상	3,000만원
자녀수	지급액	지원내용															
첫째아	440만원	월1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24개월															
둘째아	1,100만원	월15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60개월															
셋째아	1,700만원	월25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60개월															
넷째아이상	3,000만원	월45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60개월															

분야	세 부 사 업 명 (소 관 부 서)	지 원 기 준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임신·출산 지원	출산 축하용품 (미래전략담당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함	5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미래전략담당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1회에 한하여(신청월 다음달에)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다둥이 안전보험 (미래전략담당관)	가. 둘째아이 이상 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3세이하)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 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 자녀(3세이하)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6세(생후 72개월)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가입 결정)
	영유아양육수당 (미래전략담당관)	가. 둘째아이 이상 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 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 자녀 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 를 둔 사람	6세(생후 72개월) 미만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전입 지원	전입자 지원금 (미래전략담당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2명 이상의 지원금은 동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 1명 : 10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50만원 · 4명 이상 : 70만원
	전입 학생 지원금 (미래전략담당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 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분야	세부 사업명 (소관부서)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하는 학생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분야	세부 사업명 (소관부서)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전입 지원	전입군인휴가비 (미래전략담당관)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군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 (전환 복무자 포함)	·휴가비 : 최대 30만원 (휴가 1회당 15만원씩 2회 지급)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미래전략담당관)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1인 30만원
	귀농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문화관광과)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1회 지원	·전업 문화예술인 200만원 이내
	전입자팸투어 (문화관광과)	전입자지원금 지원대상 중 신청자	·주요 시설물과 유적지, 관광지 등 현장 답사
	결혼식장무료대여 (시설체육과)	전입자지원금 지원대상 중 신청자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 시 대관료 전액 감액
결혼 장려	결혼장려금 (미래전략담당관)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 된 경우 (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분야	세 부 사 업 명 (소 관 부 서)	지 원 기 준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분야	세 부 사 업 명 (소 관 부 서)	지 원 기 준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주 거 지 원	신 혼 부 부 대 출 이 자 지 원 (미 래 전 략 담 당 관)	<p>가. 지원대상</p> <p>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거주 목적으로 하동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p>나. 지원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택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p><u>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잔액의3% 이내 이자(연 최대 3백만원 한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횟수: 분기별 지원 · 지원기간: 최장 3년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인구증대지원 신청서

(앞면)

신청 분야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 지원 <input type="checkbox"/> 결혼장려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경남 하동군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택)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 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 <input type="checkbox"/> 넷째 이상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출산축하용품 <input type="checkbox"/> 다둥이 안전보험(둘째 이상)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양육수당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다둥이 안전보험」은 동 보험사 및 타 보험사에 기 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 지원	전 입 자 현 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전입일자
<input type="checkbox"/> 전입자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자 팸투어 <input type="checkbox"/> 전입학생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식장 무료 대여 <input type="checkbox"/>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결혼 장려 지원	성 명(남)		생년월일		전입일	
	성 명(여)		생년월일		전입일	
	혼인일자		<input type="checkbox"/> 수혜사실(년도)있음 <input type="checkbox"/> 수혜사실 없음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혼인신고일	년 월 일	휴대전화		
주 택 현 황	주 택 종 류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매입		임대인 (소유자)	
	전세보증금 또는 매매금	금	원	임차면적	㎡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현황	대 출 기 관	대 출 금 액		원	
		대 출 잔 액		원	
	대 출 조 건	연 대 출 이 자		%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신 청 금 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민원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 4.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6.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배우자의 부 또는 모 기준) (〃) 7.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8.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류 각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 납부 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9.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 증명서 10.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11.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부부 각1부. 12.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 및 동의서

1.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혼인 기간 및 다른 주택 소유 등 확인		본인자필명 서		
1.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년 월 일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주택소유여부	전세자금: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매입자금: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하동군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음			
3. 대출용도	본인(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마련 용도’ 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4. 임차계약 사항	본인(또는 배우자)는 임차(매입) 주택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실제주택소유자와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			
5. 지원취소 및 환수	신청자가 사업에 선정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하는 것에 동의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사유</th> </tr> </thead> <tbody> <tr> <td>지원취소 및 환수조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경우 ·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td> </tr> </tbody> </table>		구분	사유
구분	사유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경우 ·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2.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의 신청 자격에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서약·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대상자와 관계
	주소	연락처			

대상자	임신부 인적사항			임신 개월수	우선선정 대상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산예정일)	
		.	.	개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고위험 <input type="checkbox"/> 다태아

서비스	이용내용	가사지원, 정리수납 등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다자녀여부	<input type="checkbox"/> 첫째아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안내

○ 신청인의 범위 : 임신부 및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2. 임신사실확인서 1부
 3. 고위험 임신부 등 우선순위 추가 확인서류(해당시) 1부

※ 유의사항 :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상기 외)를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가족(배우자 등)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 결혼이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 미등재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자 및 임신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확인을 위한 진단기록, 병력, 진단서 및 소견서 내용,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 지원조건 부합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신상태, 진단서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문서보존기간)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계 :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배우자성명		배우자 생년월일	
연락처	본 인		
	배우자		
주소			
검사일시		분만예정일	
진료비총액			
지원신청액 (결정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 등 필요시) 4. 태아염색체검사결과 및 계산서·영수증 1부. 5. 의사소견서 1부. 6. 통장 사본 1부.
----------	--

위와 같이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뒷 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본인은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임신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자 여부 등)가 하동군보건소에서 수집 · 이용 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임신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등

▶개인정보 조회 · 열람 · 활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내용 : 주민등록등본 조회 · 열람 ·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나 영구보존이 필요한 경우 영구보존을 할 수 있음.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태아염색체검사비 지원 일부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제공) 임신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가 검진기관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하동군보건소에서 검진기관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임신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을 하기위함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등

▶개인정보 조회 · 열람 · 활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내용 : 주민등록등본 조회 · 열람 ·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나 영구보존이 필요한 경우 영구보존을 할 수 있음.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태아염색체검사비 지원 일부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하동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산후조리비 신청		[] 이 용 : 100만원 [] 미이용 : 50만원 [] 기 타 : 원
지원대상	산모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출생아	성명	출산일
	출생아	성명	출산일

지급 받으실곳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산모)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 〉

확인
(√ 체크)

1.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신청인이 주민등록 주소나 출산 증빙자료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 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공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지원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인의 범위 :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 1부.)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 등 필요시) 산후조리원 영수증(이용자에 한함.) 1부. 통장 사본 1부.
-------------	---

[별지 제6호 서식]

하동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경남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여부	[] 여 [] 부
주 소				전화번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산 모(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아(성명)			출산일
	출생아(성명)			출산일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기간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원	경남 산후조리비 지원금	원

**하동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자부담금 신청액** 원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 >

확인
(√ 체크)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신청인이 주민등록 주소나 출산 증빙자료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 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지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4. 귀하께서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별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 1부).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지원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인의 범위 :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 등 필요시)
4. 본인부담금 영수증(이용내역 포함.) 1부.
5. 통장 사본 1부.

하동군 공고 제2024 - 27호

하동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군 수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15/100 산정수	
계	38,077		5,712	5개 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최소기준 산정 · 기본은 읍면별 총수 * 15/100 · 그 총수가 1만분의 5미만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5로 한다. (5÷10,000)×38,077명 = 19명(우리군 없음)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10,000)×38,077명 = 381명
하동읍	8,259	381		
화개면	2,690	381		
악양면	3,171	381		
적량면	1,721	259		
횡천면	1,700	255		
고전면	1,917	288		
금남면	3,028	381		
금성면	2,563	381		
진교면	5,009	381		
양보면	1,551	233		
북천면	1,486	223		
청암면	1,231	185		
옥종면	3,751	381		

■ **군의원**

(단위 : 명)

지 역 선거구	읍면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20/100 산정수	
가선거구	계	7,582		1,517	-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이상의 서명과 청구 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 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 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7,582명 = 76명
	화개면	2,690	76		
	약양면	3,171	76		
	적량면	1,721	76		
나선거구	계	11,876		2,376	-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이상의 서명과 청구 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 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 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11,876명 = 119명
	하동읍	8,259	119		
	황천면	1,700	119		
	고전면	1,917	119		
다선거구	계	10,600		2,120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 소기준이상의 서명과 청구권 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 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 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10,600명 = 106명
	금남면	3,028	106		
	금성면	2,563	106		
	진교면	5,009	106		
라선거구	계	8,019		1,604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 소기준이상의 서명과 청구권 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 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 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8,019명 = 81명
	양보면	1,551	81		
	북천면	1,486	81		
	청암면	1,231	81		
	옥종면	3,751	81		

2024년 1월 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4 - 27호

하동군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38,334	38,311	23	1,917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2024년 1월 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4 - 27호

하동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하동군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38,335	38,311	24	5,477	청구권자 총수의 1/7 이상

2024년 1월 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 2024-82호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01월 15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해복구 사업
- 나. 명 칭 :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하동군수
- 나.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화심리 지내
- 나. 면 적 : 372,068㎡
- 다. 규 모
 - 호안 : 식생블럭 설치 L=196m-전석쌓기 L=221.5m
 - 고지배수로 1식, 게이트 펌스 1식, 부대공 1식 등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 착수일 : 2022년 3월
- 나. 준공 예정일 : 2024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 편입면적은 사업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 바랍니다.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장 소 : 경남 하동군 건설과
- 기 간 : 2024. 01. 15. ~ 2024. 01. 30.(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과 하천(055-880-25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별첨). 1부.

하동군 공고 제2024 - 91호

공 고 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공고명칭 : 자동차 검사 안내 및 명령 과태료 처분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 2024. 1. 16. ~ 2024. 1. 31.(15일간)
-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4. 문 의 처 : 하동군 안전교통과(☎055-880-2399)
- 5. 공고사항

가. 자동차검사 경과안내 대상차량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자동차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따라 자동차운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지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 77%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압류예고통지를 받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4. 1. 15.

하 동 군 수

<붙임>

■ 사전안내장(12월)

순서	차량번호	소유자	우편번호	주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등기번호
1	57수6351	정*원	52334	경남 하동군 적량면 안설길 5*~12	2023.12.05	이사감	일반
2	98어9229	(주)성민*력	52333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183-*2	2023.12.05	수취인불명	일반
3	91더3768	곽*원	52309	경남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1*7-7	2023.12.05	수취인불명	일반
4	47주0165	곽*원	52309	경남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1*7-7	2023.12.05	수취인불명	일반
5	83우3636	강*철	52332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송림3길 1*~1	2023.12.06	주소불명	일반
6	95소4090	주식회사**건설	52353	경남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8 2층	2023.12.05	이사감	일반
7	138보5477	김*연	52335	경남 하동군 양보면 상쌍길 *	2023.12.05	이사감	일반
8	83다9058	임*택	52352	경남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1*0	2023.12.06	이사감	일반
9	12누4700	OEU*****ITH	52316	경남 하동군 북천면 우리길 33-*	2023.12.07	수취인불명	일반
10	14부7503	최*나	52302	경남 하도군 화개면 쌍계길 2*~21	2023.12.15	이사감	일반

■ 유효기간경과엽서(3월)

번호	자동차	소유자	우편번호	주소	반송일	반송사유	등기번호
1	86누9298	조*택	5235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50-*8	2023.12.05	이사감	10948-6128-4997
2	87두6844	백*호	52323	경남 하동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9	2023.12.08	반송	10948-6128-4998

<붙임>

■ 검사명령서(9월)

번호	자동차	소유자	우편번호	주 소	반송일	반송사유	등록번호
1	97거2986	이*열	52332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33 2층	2023.12.08	반송	10948-6128-5037
2	06라0965	박*용	52349	경남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 1*1동 9*7호(미진스 위트빌)	2023.12.08	반송	10948-6128-5004
3	16서7427	양*식	52349	경남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6*-4	2023.12.08	반송	10948-6128-5006
4	97거2176	김*운	52352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	2023.12.04	이사	10948-6128-5036
5	81더7830	(주)우정랜드산업	52346	경남 하동군 진교면 구도속도로 5*4	2023.12.04	이사	10948-6128-5023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번호	자동차	소유자	우편번호	주 소	반송일	반송사유	등록번호
1	34고2073	하동읍**방 범대	52325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4	2023.12.05	수취인불명	10648-6128-5052
2	81너4504	주식회사 **전기	5233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50. 2층	2023.12.04	이사감	10948-6128-5279
3	801마3848	부광조경(주)	52329	경남 하동군 중앙로 49,2층	2023.12.11	반송	10948-6128-5078
4	20조1596	김*정	5232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0-14	2023.12.1	반송	10948-6128-5057
5	91우7643	박*영	52335	경남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4-11	2023.12.08	반송	10948-6128-5054
6	90도2470	김*현	52349	경남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 10*동 140*호(미진 스위트빌)	2023.12.08	반송	10948-6128-5075
7	28누3964	정*승	52353	경남 하동군 금성면 향도길 3*	2023.12.04	이사감	10948-6128-5047

8	37두6133	고*주	52344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4*,4*3호(삼영아파트)	2023.12.08	반송	10948-6128-5064
9	02루2461	김*수	52353	경남 하동군 금성면 궁항당산길 3*-17	2023.12.08	반송	10948-6128-5062
10	89소9735	두*건설(주)	52345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5	2023.12.04	이사감	10948-6128-5080
11	82두8931	우*조경개발(주)	52310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9	2023.12.18	이사감	10948-6128-6114
12	88조8735	박*길	52344	경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3, 1층	2023.12.18	이사감	일반
13	06무6341	여*화	52339	경남 하동군 고전면 사막2길 1*-6	2023.12.19	이사감	일반
14	97도8241	주식회사 네**케어	52337	경남 하동군 고전면 진양로 5*6	2023.12.19	이사감	일반
15	94우7432	안*석	52324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 * 나동 4*5호 무지개맨션	2023.12.22	반송	10948-6128-6113
16	43무9710	(주)지앤아이*이오	52317	경남 하동구 북천면 경서대로 19*7-103	2023.12.22	반송	10948-6128-6115

하동군 공고 제2024-95호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 '23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5.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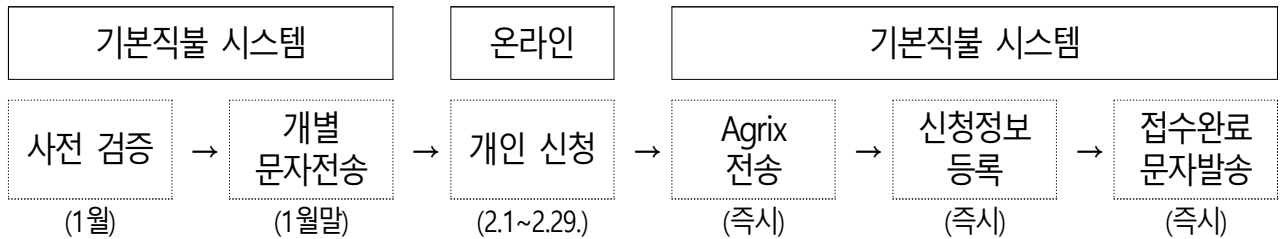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

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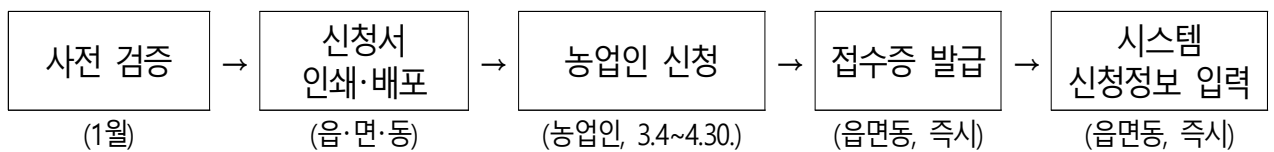
-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나. 비대면 간편 신청



- 대상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4. 2. 1. ~ 2. 29.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다.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4. 3. 4. ~ 4. 30.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23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

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 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의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다만, 종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 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24년), '25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
3. 승계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재지의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삼 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 이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읍면동에 제출(~5월)
5.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득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

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6. 유의 사항

가.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www.agrix.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24-110호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공고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하동군수

1. 신청기간 : 2024. 1. 22. ~ 2. 23.

2. 신청장소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식량특작계

*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②벼재배 논
-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
- ② 실제 지목이 논이며, 재배 품목이 벼인 농지
-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 (11.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얇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나. 신청인 자격요건

○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법인·단체')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인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등

③ 법인·단체 신청 면적은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50ha 이상이어야 함.

* 법인·단체 구성원(농업인 등)은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어야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로 기본형 직불과 동일

④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및 ③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11.30 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얇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중간 물떼기	▶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 개방 및 시작·종료일에 증빙사진 제출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활동 인정	15만원/ha (15원/m ²)
논물 얇게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종료 후 2~5cm 깊이로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증빙방법) 배수물꼬 부근 2~5cm의 뚝을 조성하거나 배수물꼬 높이를 조절하고, 마른 논바닥 4회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원/m ²)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에 밑거름 투입과 투입하거나 추수 후 가을갈이 시 투입하여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 따른 바이오차 사용 ** (증빙방법)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36.4만원/ha (36.4원/m ²)

- ‘중간 물떼기’, ‘논물 얇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 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사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m²)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²)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영체육성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5. 신청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호)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를 인쇄·배부
2. 법인·단체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 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 사업담당과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시·군 사업담당자가 법인·단체 대표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세부 등록신청서 출력 및 전달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에게 세부 등록신청서 개별 배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필지 및 이행활동을 선택·작성하여 취합 및 시·군 사업담당과에 최종 제출

6. 유의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발기준

- 사업대상자는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법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

나.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포기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청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가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 자 승계 가능
 - 승계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과 동일, 접수된 사업대상자 변경신청서는 ‘기본형 공익직불’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충족을 확인 후 승계 처리
- 사업참여 법인·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사업대상자 2/3의 동의를 받아 사업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군에 제출
 - 법인·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의 사업 포기는 불가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준수사항)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점검 시스템에 등록
 -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 활동별 증빙자료 제출기간: (중간 물떼기) 6~7월, (논물 얇게 걸러대기) 7~9월, (바이오차 투입) 3~10월
 - 이행점검(서면·현장)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활동비 최종 산출
- (부정수급 관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이행점검 미이행·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농업기술센터 식량특작(055-880-2423) 또는 한국농어촌공사(044-864-6959)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